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38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의 학대행위 명시	3
2. 동물의 구조·보호의무 주체에 경찰관서의 장 추가 및 지자체 보호 조치 요청 의무	6
3. 구조·보호 또는 격리조치 방해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1. 18.

3. 회 부 일 : 2025.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유기·유실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의 구조·보호 및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나 전기자전거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여 매달린 동물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령상 동물 구조·보호조치에 경찰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에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보호의무 주체에 경찰관서를 추가하며, 동물학대 및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강화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4조 및 제97조).

Ⅲ. 검토의견

1.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의 학대행위 명시

개정안은 동물을 자동차·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에 매달아 운행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4호 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생략)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4.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설>	마. 동물을 차 ¹⁾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 제10조제2항은 동물학대를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97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을 차량에 매달아 끌고 가는 학대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최근 소유자가 전기자전거에 개를 매달아 30분 이상 이동하면서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²⁾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른바 ‘파샤법’ 제정 요구가 온라인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통해 확산되는 등 이동수단을 이용한 동물학대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예방·근절하려는 것으로 보임.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 2) 2025.8.22. 충남 천안에서 견주가 보더콜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30분 이상 이동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해당 사건 이후 관련법 개정 요구(이른바 ‘파샤법’)가 온라인 서명운동·집회 등을 통해 확산됨.
위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위반(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혐의로 2025. 9. 4. 송치·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

다만, 현행법 제10조제2항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이른바 ‘과사법’ 사례 역시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보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동물을 차량 등 이동수단에 매달아 운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도 현행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입법 필요성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 사육·훈련 등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현행법³⁾에 따라 이미 처벌이 가능하고, 실제로 자신이 사육하던 개를 자전거에 매달아 운행하면서 개가 바닥에 끌리도록 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⁴⁾가 존재하는 바, 해당 유형의 행위는 현행 규정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으므로 개정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 다. (생략)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4) 제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정610 판결

개정안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의무 주체에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고, 경찰관서의 장이 동물을 임시 보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 5 –

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시·도지사¹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_____.

③ ----- . 다만, 경
찰관서의 장이 동물을 보호 중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
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
· 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의 의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 학대 등 긴급 상황의 특성상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경찰이 구조·보호 주체로 명시되지 않아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개정안은 경찰을 구조·보호 주체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경찰을 통한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경찰’을 구조·보호 의무 주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동물 구조·보호는 포획·처치·보호시설 연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관련 인력·장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찰에게 직접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또한 경찰과 지자체가 구조·보호 의무를 병렬적으로 부담할 경우, 현장에서 조치 주체가 이원화되어 수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경찰청은 동물의 구조·보호 업무가 포획, 수의학적 처치, 보호시설 연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동물보호센터 등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지자체가 전담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또한, 구조 업무를 경찰의 일반 임무로 확대할 경우 중대범죄 대응력 저하, 긴급출동 지연 등 치안 기능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조 주체가 경찰과 지자체로 이원화될 경우 책임 주체가 모호해져, 사고 발생 시 책임귀속 문제 등 실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찰청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경찰을 구조·보호의 직접적 의무 주체로 추가하기보다는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및 격리 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리가 이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3. 구조·보호 또는 격리조치 방해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개정안은 누구든지 동물의 구조·보호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및 제97조제5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u>구청장</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u>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u> 은-----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u>구청장</u> 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	② ----- <u>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u> 은-----

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
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
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97조(벌칙) ① ~ ④ (생략)

[illegible]

③ -----

----- . 다만, 경
찰관서의 장이 동물을 보호 중인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
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
· 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 12. (생략) ⑥ (생략)	⑤ -----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u>구조·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한 자</u> 9. ~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34조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 구조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에 따른⁵⁾ 동물보호센터는 이러한 구조·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전담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 현장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소속 직원이나 위탁기관 종사자 등 비공무원 인력이 구조·보호·격리조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구조·보호·격리조치 활동에 참여하는 이러한 민간 인력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조 현장에서 물리적·언어

5)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적 방해가 발생하더라도 실효적인 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구조·보호·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물 구조 현장의 안전성과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방해”의 개념은 그 자체로 포괄적·추상적이어서 단순 항의나 의견표명 등 정당한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와 같은 요건을 부가하거나,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일정한 유형을 중심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에 의하여 구조·보호·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동물보호법 학대 처벌 규정

금지 행위		위반시 벌칙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공개된 장소 혹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가. 배회하는 동물 나. 내버려진 동물 다. 피학대 동물 중 소유 자등을 알수 없는 동물	을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소유자등이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 벌금
	맹견을 유기하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 벌금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참고2

현행법상 학대 사건 발생 시 대응 체계

※ 동물보호관 대상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발체('24.7. 지자체 배포)



